

2024 관세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정오표

2024-02-16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34	상단 표 아래	내용 추가	<p>다만,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다음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p> <p>②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p> <p>③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p> <p>④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p>
41	하단 사각 박스	영 제15조의 제2항 영 제15조의2 제5~6항	영 제15조의2 제2항 영 제15조의2 제6~7항
47	2)등록요건	<p>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2)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p> <p>①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p> <p>③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p> <p>④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p> <p>(삭제) 2)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p> <p>㉠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p> <p>㉡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p> <p>㉢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p> <p>㉣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p>	<p>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 8조 3항)</p> <p>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물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영 제 15조의 5 3항)</p> <p>아래 ①~④ 유지</p>
59 (추가)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영 제24조 제1항) 4) 담보제공 요구(영 제24조 제2항) 5) 분할납부 취소 및 과징금 일시 징수(영 제24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23.12)	내용모두 삭제
64	③	<p>㉠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 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 제2항 및 제4항은 2022년 및 2023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항)

91	1) 수령 ③의 둘째줄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제외한다.
100	자본거래의 정의	(영 9조 내용추가)	<p>영 제9조(자본거래)</p> <p>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p>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114 (추가)	1. 거주자의 해외직접 투자의 신고 등(규정 제9-5조 제1항)	<p>(1) 원칙</p> <p>거주자(해외이주 상속증여자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 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p> <p>㉡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p> <p>㉢ ㉠ 내지 ㉡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p> <p>(2) 예외</p> <p>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후 보고할 수 있다.</p>	<p>거주자(해외이주 상속증여자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 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23. 7. 4. 개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143 (추가)	(1) 업종(영 제3조 제1호)	<p>㉠ 경영·상담업</p> <p>㉡ 법무·관련·서비스업</p> <p>㉢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p> <p>㉣ 엔지니어링·서비스업</p> <p>㉤ 디자인</p> <p>㉥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p> <p>㉦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p> <p>㉧ 운수업</p> <p>㉨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p> <p>㉩ 그 밖에 지식기반요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p>	<p>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23.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143 (추가)	(2) 권리의 사용(영 제3조 제2호)	<p>(2) 권리의 사용(영 제3조 제2호)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p>	<p>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23.12)</p> <p>(2) 권리의 사용(영 제3조 제2호, 제3호)</p> <p>*제3조2호: 지식기반요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p> <p>*제3조3호: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p>

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